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정재동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시행계획의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신고체계의 마련, 협력체계의 구축,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 조 ~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, 검토의견

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10 개의 조무으로 구성됨.

ㅇ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
-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음
- 안 제5조에서는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금천구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 하여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,
-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.
- 한국소비자원의 '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'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78,596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,642건으로 27.5%를 차지하고 있음.

[어린이 안전사고 현황]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전체 안전사고 건수	72,013	73,007	70,022	74,000	78,596
어린이 안전사고 건수	24,097	24,971	18,494	15,871	21,642
전년대비 증감률	△6.2	3.6	△25.9	△14.2	36.4
어린이 안전사고 비율*	33.5	34.2	26.4	21.4	27.5

^{*} 전체 안전사고 중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 반을 조성하고,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행정적·제도적 장치를 통해,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에서는 시설별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**답변요지**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<u>원안가결</u>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